

투자 위험 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한국민참여정책형뉴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국민참여정책형뉴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한국민참여정책형뉴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한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1년 4월 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1년 4월 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 또는 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74,000,000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2021년 3월 29일 ~ 2021년 4월 16일. 단, 모집(판매)기간 이후에는 추가로 자금납입이 불가능 하며, 모집(판매)금액 조기 모집 완료 시 모집예정기간은 예정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본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은 4년으로 장기투자신탁이며, 환매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형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을 중도에 현금화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하위펀드가 투자자산으로부터 원리금회수가 지연될 경우 손실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투자할 여력이 있고 (비)상장 주식, 메자닌증권 및 사모펀드 등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 90일 이내 한국 거래소에 집합투자증권으로 상장 될 예정이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보다 거래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주식 및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 (비)상장 메자닌 증권 및 인수금융 용도의 선순위 대출(PDF) 등에 주로 투자하기에 낮은 유동성, 적절한 가격평가의 어려움,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의 제약 및 자료의 낮은 신뢰성 등 상당히 높은 투자위험을 수반합니다. 추가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모펀드이기에 투자한도, 공시의무 등 법적제한 사항이 적어 공모펀드대비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본 투자신탁은 만기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현물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비상장주식, 메자닌증권, 사모펀드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된 위험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매일 기준가격이 산정되지 않고 매주1회 또는 매월 1회 산정될 수 있는 등 기준가격 산정주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대상자산의 가치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도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청구 시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간의 기간이 오랜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매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뉴딜산업 관련 기업에 속하는 증권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내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사의 적절한 투자대상 발굴, 실행 및 실현 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적절한 투자대상을 확보하거나 확보된 투자대상의 투자성과가 성공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률 및 규제에 의하여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기업의 수가 제한되고, 투자수익이 이러한 소수의 투자대상 기업의 낮은 성과로 인하여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1.4.8

신한국민참여정책형뉴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코드: DH095]

투자 위험 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이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본손실위험, 장기폐쇄형펀드 구조관련 위험, 하위펀드 투자위험, 투자회수 가능성, 유동성 위험, 주식관련사채·상환전환 우선주 등 투자위험, 비상장기업투자위험, 분배금지급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신한국민참여정책형뉴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2020년 9월 발표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 /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부문 유도 / 국민들과의 성과 공유'를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중 하나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3가지(①정책형뉴딜펀드, ②뉴딜인프라펀드, ③민간뉴딜펀드) 중 '①정책형뉴딜펀드'에 해당하며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동 펀드는 '②뉴딜인프라펀드'와 달리 별도의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뉴딜 관련 상장 및 비상장 중소, 중견 기업 등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주로 투자하며,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이하 '피투자 펀드')를 선별해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 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뉴딜 관련 상장 및 비상장 중소, 중견 기업 등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선별해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운용전략 외에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므로 현재 성과 비교를 위한 적합한 비교 지수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특정한 비교 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혼합자산, 폐쇄형(중도환매불가능), 단위형,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총 보수	1년	2년	3년	4년	5년
수수료선취-오 프라인(A1)	납입금액 의 1.00% 이내	0.995	0.500	1.060	298	505	719	943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1)	없음	1.245	0.750	1.270	226	460	703	955	-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 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
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 %)**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한국민참여정책형뉴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021.2.28 현재)

**운용전
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자산)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조성호	1976	책임운용역	9개	7,588 억원	30.84%	-	30.84%	-	3년 3개월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특별자산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특별자산운용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동안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투자자
유의사
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본 투자신탁의 피투자펀드는 (비)상장주식 및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 (비)상장 메자닌 증권 및 인수금융 용도의 선순위대출(PDF) 등에 주로 투자하기에 낮은 유동성, 적절한 가격평가의 어려움,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의 제약 및 자료의 낮은 신뢰성 등 상당히 높은 투자위험을 수반합니다. 추가적으로 피투자펀드는 사모펀드이기에 투자한도, 공시의무 등 법적제한 사항이 적어 공모펀드대비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본 투자신탁은 만기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현물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비상장주식, 메자닌증권, 사모펀드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된 위험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주요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 손실 위험	본 투자신탁 및 하위펀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본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장기폐쇄형 펀드구조 관련 위험	본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은 4 년으로 장기투자신탁이며, 환매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형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을 중도에 현금화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하위펀드가 투자자산으로부터 원리금회수가 지연될 경우 손실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투자할 여력이 있고 (비)상장 주식, 메자닌증권 및 사모펀드 등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 90 일 이내 한국거래소에 집합투자증권으로 상장 될 예정이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보다 거래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 투자위험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위펀드는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 운용내역 및 기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하위펀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산의 가격의 반영도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이루어

	어 집니다. 결과적으로 본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 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회수 가능성	하위펀드의 청산 시까지, 성공적으로 하위펀드의 투자대상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 하위펀드는 그 투자대상 펀드나 회사의 지분을 세컨더리 거래에서 NAV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처분하여야 하는 등 예상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을 하여야 할 수 있으며, 하위펀드가 적시에 좋은 조건으로 하위펀드가 보유한 다른 투자대상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을 처분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하위펀드의 적시환매가 어려운 경우 본 투자신탁은 현물 상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하위펀드가 투자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지분 혹은 메자닌 투자는 주로 (비)상장기업들로서 매매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적시에 이익을 실현하거나 전혀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관련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주식관련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채권 대비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 매각 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특정 상환일이나 기타 일자에 원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위주로 발행됩니다. 또한 장내 상장되어도 일반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며, 펀드 만기 시까지 전액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비상장기업 투자위험	하위펀드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장기업에 비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의 낮은 투명성, 열위한 제도적인 투자자 보호자 장치, 제한적인 투자정보, 감사보고서등 투자정보의 낮은 신뢰성, 낮은 유동성, 높은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투자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는 동 투자신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배금지급 위험	투자자에 대한 분배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투자 대상 하위펀드의 성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펀드 만기 시 펀드 만기 시 하위펀드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그 동안 수령한 분배금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결산을 통하여 현금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최종상환 시 정기결산을 통하여 분배된 금액을 포함하여 손익 계산되므로 투자자가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예상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다만, 집합투자규약 제 7 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 28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으로 합니다.
환매 방법	환매금지형으로 해당사항 없음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산정방법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p>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p> <p>※ 상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집합투자업자	신한자산운용(주)(대표번호: 02-767-5777 /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모집(판매)기간	2021년 3월 29일 ~ 2021년 4월 16일. 단, 모집(판매)기간 이후에는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 하며, 모집(판매)금액 조기 모집 완료시 모집예정기간은 예정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74,000,000좌)
효력발생일	2021년 4월 9일	존속 기간	<p>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4 년간]으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규약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2.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4 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유중인 집합투자규약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의 투자자금 전부 회수 시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해당 상환대금이 투자신탁에 입금되는 날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까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종류(Class)</th> <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72 358 303 548" rowspan="2">판매 수수료</td> <td data-bbox="303 358 510 459">수수료선취</td> <td data-bbox="510 358 1560 459">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td> </tr> <tr> <td data-bbox="303 459 510 548">수수료미징구</td> <td data-bbox="510 459 1560 548">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td> </tr> <tr> <td data-bbox="172 548 303 730">판매 경로</td> <td data-bbox="303 548 510 730">오프라인</td> <td data-bbox="510 548 1560 730">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국민참여정책형뉴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DH095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 A1)	DH0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종류 C1)	DH09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폐쇄형(환매가 불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74,000,000좌(740억원 수준, 1좌당 1,000원)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주3)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최초설정 후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의 모집기간(판매기간) 종료일까지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모집 가능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모집기간 : 2021년 3월 29일 ~ 2021년 4월 16일. 단, 모집(판매)기간 이후에는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하며, 모집(판매)금액 조기 모집 완료시 모집예정기간은 예정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2)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 및 환매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의 상장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의 거래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 상장요건

- (1) 규모요건: 신탁의 원본액이 3 억원 이상일 것
- (2) 발행요건: 당해 수익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 (3) 1 좌당 원본액: 1 좌당 원본액이 500 원 이상일 것

다. 상장폐지요건

- (1) 규모요건: 신탁의 원본액이 3 억원 미만인 되어 시장성이 상실되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2)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전액 증도환수: 수익증권의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증도에 전액 환매 등이 된 경우
- (3) 기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109 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수익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구분	내용
상장시장 명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일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90 일 이내
거래방법	증권시장을 통한 경쟁매매

※ 상기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 기준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장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국민참여정책형뉴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DH095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 A1)	DH0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종류 C1)	DH09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21.04.19	최초 설정(예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4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2.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유중인 집합투자규약 제15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의 투자자금 전부 회수 시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해당 상환대금이 투자신탁에 입금되는 날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까지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8,19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inhanfund.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1.2.28 현재)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자산)				운용경력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 자기구 수	운용 규모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조성호	1976	책임운용역	9 개	7,588	30.84%	-	30.84%	-	3년 3개월

운용	사모투자신탁	자닌/ ETF	뉴딜 관련 증권, 중소기업 : 50% 이상
신한자산자산운용	신한국민참여정책형뉴딜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1호	상장사 지분(유상증자 및 신규자금 유입형태) 및 메자닌, 비상장사 지분(구주 포함) 및 메자닌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되 뉴딜관련 인수금융 선후순위, 상장주식 및 상장지수 펀드에 일부 투자	뉴딜 관련 기업 : 결성금액의 60% 이상(뉴딜관련 중소 및 중견기업 투자 포함) 뉴딜 관련 증권, 중소기업 : 결성금액의 50%이상
오라이언자산운용	오라이언뉴딜디딤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상장 메자닌 80% 이상/비상장 메자닌 20% 이하	뉴딜 관련 기업 : 80% 이상 뉴딜 관련 증권, 중소기업 : 70% 이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지브이에이뉴딜성장알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상장기업 발행 메자닌 (CB, EB, BW, RCPS 등); 부전략: 상장주식 또는 ETF	뉴딜 관련 기업 : 60% 이상 뉴딜 관련 증권, 중소기업 : 50% 이상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타임폴리오혁신성장디지털뉴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비상장메자닌(CB, BW, EB, RCPS, CPS)/ 상장메자닌(CB, BW, EB, RCPS, CPS)/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	뉴딜 관련 기업 : 80% 이상 뉴딜 관련 증권, 중소기업 : 80% 이상
	타임폴리오혁신성장그린뉴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비상장메자닌(CB, BW, EB, RCPS, CPS)/ 상장메자닌(CB, BW, EB, RCPS, CPS)/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	뉴딜 관련 기업 : 80% 이상 뉴딜 관련 증권, 중소기업 : 80% 이상
파인밸류자산운용	파인밸류POSTIPO4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상장메자닌/비상장메자닌/비상장 주식(신주, 구주), 안전자산(RP, 정기예금, ETF 등)	뉴딜 관련 기업 : 90% 이상 뉴딜 관련 증권, 중소기업 : 90% 이상
포커스자산운용	포커스뉴딜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상장주식/ 상장메자닌/ 비상장주식/ 비상장메자닌 등의 주목적 투자군와 ETF/RP등 유동성 자산군	뉴딜 관련 기업 : 60% 이상 뉴딜 관련 증권, 중소기업 : 50% 이상
안다자산운용	안다H뉴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상장메자닌/ 상장주식	뉴딜 관련 기업 : 60% 이상 뉴딜 관련 증권, 중소기업 : 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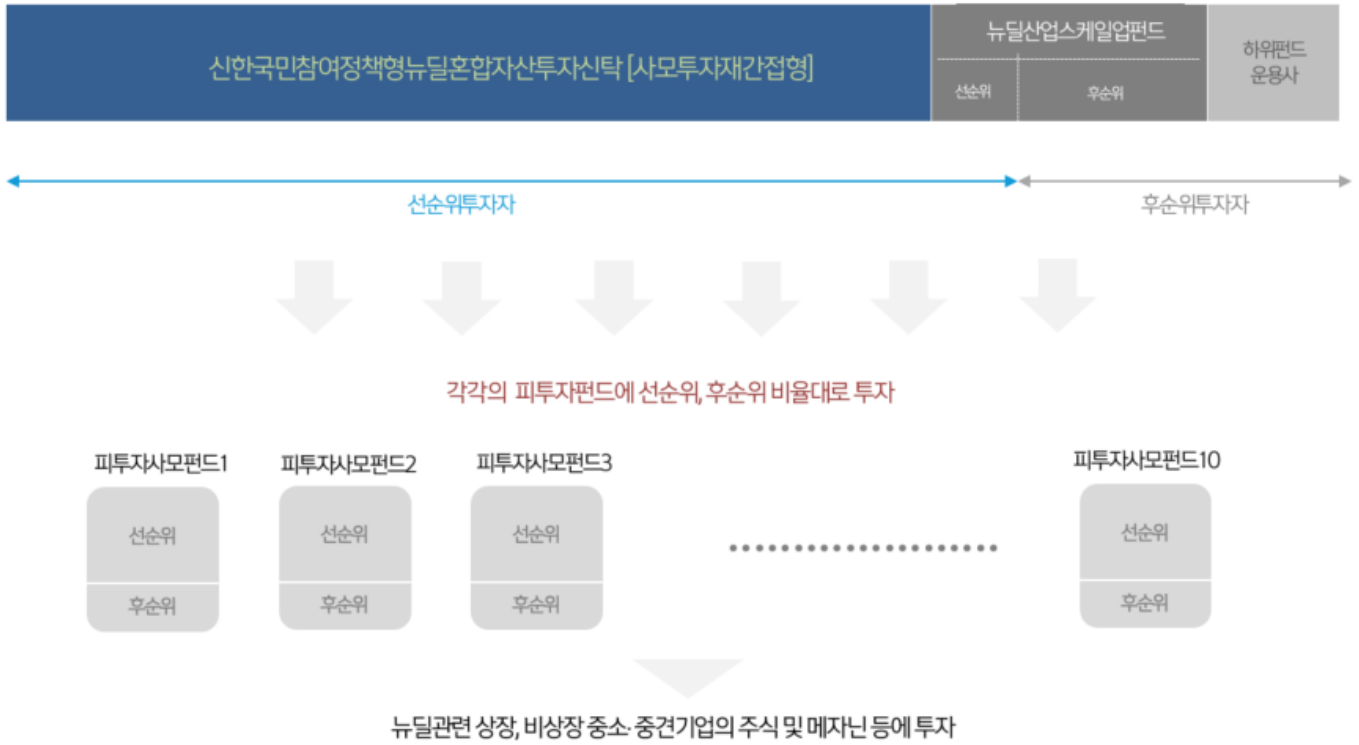
※ 상기 투자대상 피투자펀드(안)은 작성일자 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한국민참여정책형뉴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가 설정된 이후 상기 피투자펀드(안)에 투자하는 시점에 설정될 예정입니다.

※ 피투자펀드는 상기 '투자대상 및 주목적 투자대상의 투자업종 비중' 기준하에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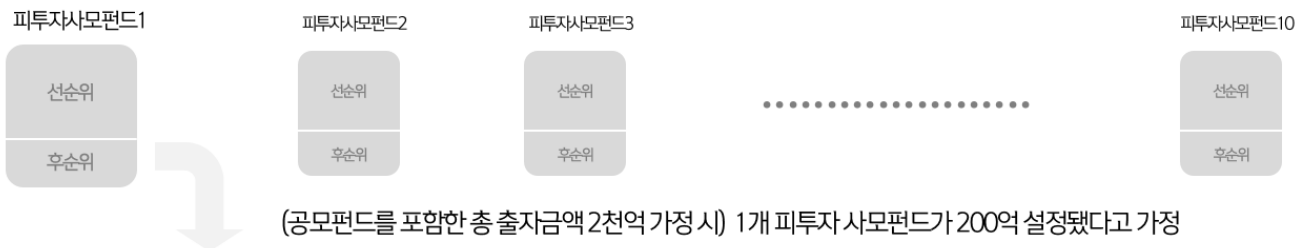
※ 상기 피투자펀드(안)은 2021년 2월 KDB산업은행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성장금융에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하단의 [피투자펀드 선정 프로세스]에 따라 피투자펀드 운용사의 재무건전성, 투자실적, 피투자펀드의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에 기재한 내용으로, 향후 피투자펀드의 상황, 피투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의 상황(인수합병 등)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되거나 교체 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펀드 투자 구조(예시)]



[피투자펀드 출자구조 및 손익배분 구조(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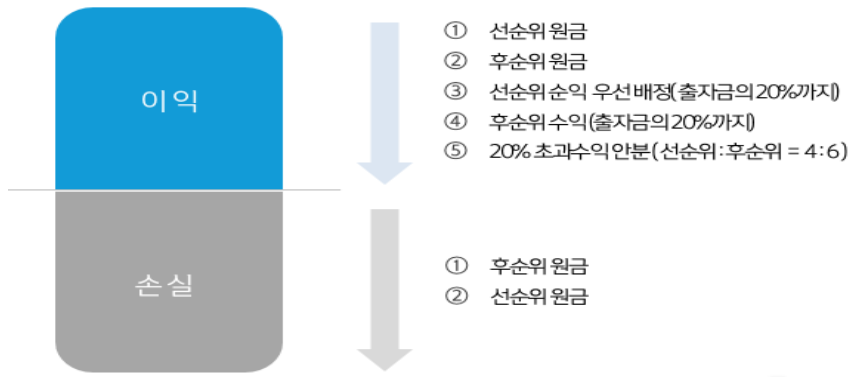


구분	출자자	금액(억원)	비율(%)
선순위	뉴딜 공모펀드	137	68.5
선순위	뉴딜산업스케일업펀드	20	10.0
후순위	뉴딜산업스케일업펀드	40	20.0
후순위	피투자펀드 운용사	3	1.5
합계		200	100.0

- 피투자펀드에 출자되는 총 약정액 2,000억원 기준이며, 총 10개 펀드에 200억원씩 출자를 가정
- 5개 공모펀드(주)출자금액이 당초 목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뉴딜산업스케일업펀드 출자금액 및 피투자펀드 최소 결성금액은 출자금액 비율로 하향조정가능

※ (주) 신한자산운용 외 4개 운용사에서 설정하고 뉴딜 관련 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

<피투자사모펀드1>에 대한 손익배분 예시



(예상)수익률구간

피투자사모펀드 전체수익률	-50%	-30.0%	-21.5%	-20%	-15%	-10%	0%	15.7%	20%	30%	50%
선순위 예상수익률	-36.3%	-10.8%	0%	0%	0%	0%	0%	20%	20%	25.1%	35.3%

※ 개별 피투자사모펀드 (1개)의 선순위 예상수익률이며, 공모펀드에서 해당 사모펀드를 투자한 비중에 따라 공모펀드 성과에 기여하게 됩니다.

※ 개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약 21.5%수준까지 후순위투자자 투자지분이 우선 손실 처리되며, 초과손실 발생시에는 선순위출자자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피투자펀드 운용펀드 마이너스 손실 시, 선순위는 후순위 투자원금으로부터 우선 손실 상계되지만, 상계액은 과표수익으로 인식되어 과표 기준가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투자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기준으로 손실이 상계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기준가는 피투자펀드 10개의 기준가를 포함하여 가중 평균하여 산정됩니다. 만기 시 피투자펀드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그 동안 수령한 분배금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설정전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설정전	제한없음

(2)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2020년 9월 발표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 /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부문 유도 / 국민들과의 성과 공유'를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중 하나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3가지(①정책형뉴딜펀드, ②뉴딜인프라펀드, ③민간뉴딜펀드) 중 '①정책형뉴딜펀드'에 해당하며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동 펀드는 '②뉴딜인프라펀드'와 달리 별도의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뉴딜 관련 상장 및 비상장 중소, 중견 기업 등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며,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이하 '피투자 펀드')를 선별해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분야

정책금융기관 등이 산업분야별 전문가 델파이조사리서치 등을 거쳐 미래유망산업분야를 선별한 공동 매뉴얼 현재 성장지원펀드 등 투자운용사의 투자대상 선별 기준, 혁신성장분야자금지원 기준으로 활용중

디지털뉴딜(3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첨단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실감형콘텐츠, 가용성강화, 지능형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차세대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디바이스, 차세대 컴퓨팅,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축정,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고부가서비스, 핀테크
그린뉴딜(1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제조공정, 로봇, 차세대동력장치,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실감형콘텐츠, 차세대반도체, 능동형조명, 객체탐지

- ①투자대상(기업, 프로젝트 등)이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②전 후방산업에도 투자하도록 하여 뉴딜펀드가 뉴딜생태계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 (전방산업) 뉴딜분야 및 품목을 활용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도·소매, 단순 운송 등 제외)
- (후방산업) 뉴딜분야 및 품목 관련 핵심 기술·소재·부품 관련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범용성 부품 제외)

※ 뉴딜 분야(품목)는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보완 확정하고, 추후 지속 조정

* 기재부·산자부 등 정부부처 차관급,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지원 및 성과관리 협의체

[피투자펀드 투자대상]

● 뉴딜 관련 상장 및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아래와 같이 투자합니다.

- ① 뉴딜 관련 기업에 목표 결성 금액의 60% 이상 투자

② 뉴딜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목표 결성금액의 50% 이상 투자

(주1) 상장기업(유가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 종목, 불공정매매, 시세조정 등 문제의 소지 또는 우려가 있는 종목은 운용대상에서 제외

(주2) 중소,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의미합니다.

[피투자펀드 선별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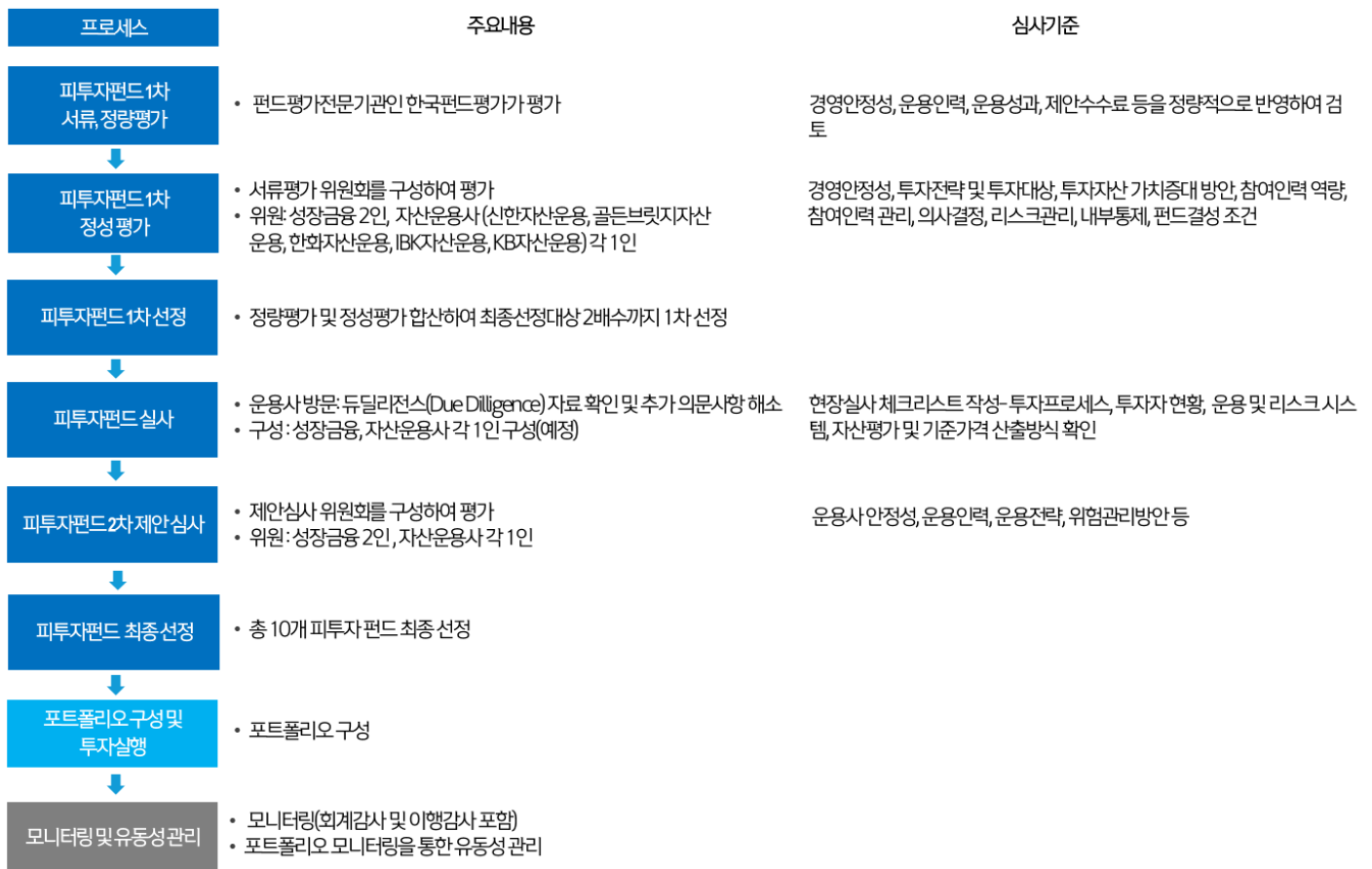
• 아래와 같은 선별조건을 바탕으로 피투자펀드 운용사를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0년 12월말 현재,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혼합자산 유형 합산 설정액이 최소 500억원 이상이면서,

- 1) 메자닌형펀드*의 총설정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이거나
- 2) 평가기준일 기준 최근 1년간 메자닌형펀드의 평균 설정액이 150억원 이상인 회사

*메자닌형펀드 : 펀드의 주요 운용전략으로 메자닌 전략을 활용하는 펀드

[피투자펀드 선정 프로세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

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집합투자증권 등	50% 초과 단,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50% 초과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합니다)
②	주식	50% 미만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합니다)(이하 “주식”이라 합니다)
③	채권	50% 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 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 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하 “채권”이라 합니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5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합니다)
⑤	어음 등	5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합니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하 “어음 등”이라 합니다)
⑥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⑦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⑧	증권의 차입	20% 이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⑨	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	

	<p>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p> <p>(2)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p> <p>(3)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p> <p>(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p>
--	--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p>	
동일종목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p> <p>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 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 한 주택저당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예외 조항을 적용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 	

	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 동일종목 투자, 파생상품 투자, 집합투자증권 투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뉴딜 관련 상장 및 비상장 중소·중견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 등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선별해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2) 상세 투자전략

뉴딜 관련 상장·비상장 및 메자닌에 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10개를 선정 ▶ 동일비중 투자

5개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신한자산운용, 골드브릿지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IBK자산운용, KB자산운용)/한국성장금융/한국펀드평가 등이 공동으로 평가

정량, 정성 평가에 의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10개 선정(피투자펀드): 동일비중 투자 예정

예상 모델포트폴리오



[피투자펀드 유동성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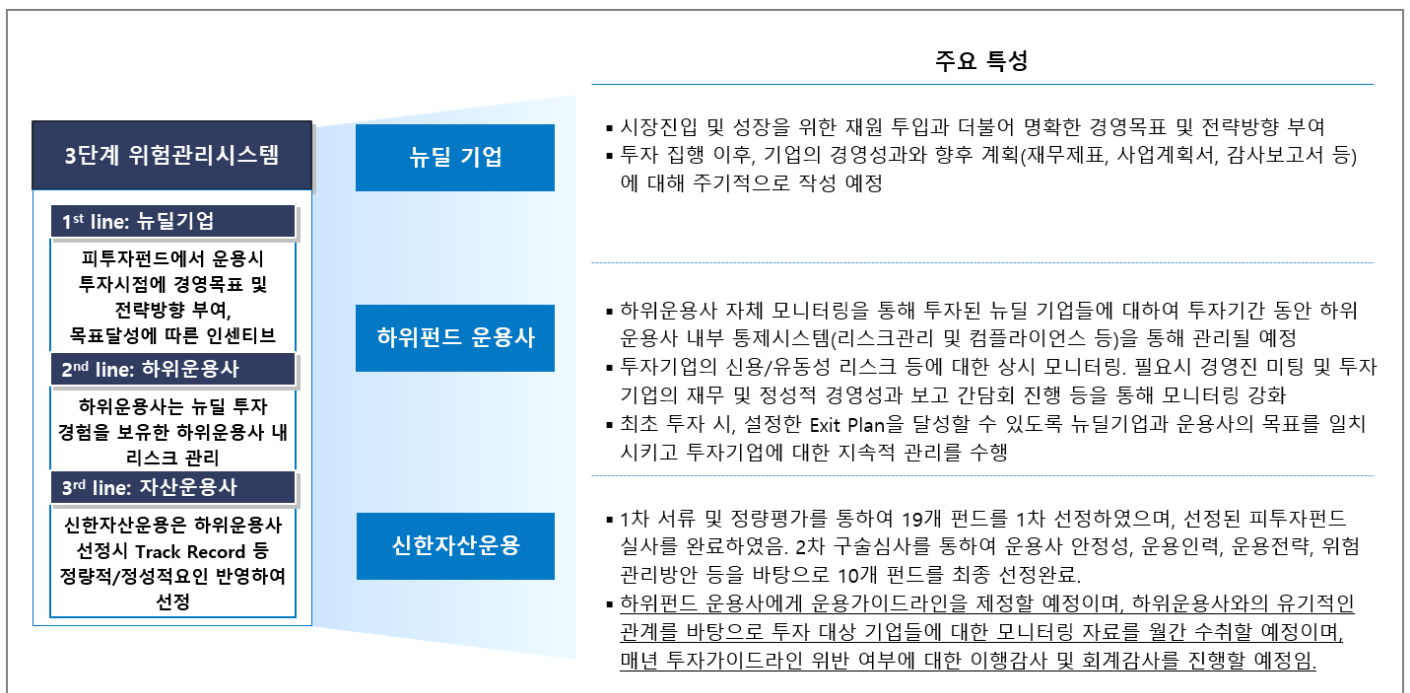
- 시장변화에 따른 성과, 위험 등을 모니터링 하여 유동성 관리
- 만기 3개월 이전에 유동성 자산으로 80%를 구성

[피투자펀드 위험관리전략]

월 1회 / 기간별 펀드 성과 / 포트폴리오 현황(자산유형별/섹터별/뉴딜펀드 여부)/, 운용경과, 운용계획 / 신탁재 산명세부/ 추가 운용 정보에 대한 요청 권한 보유함.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3단계 위험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 리스크 관리 및 사후적 모니터링(회계감사 및 이행감사 포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예시이며, 실제 운용에서는 당사 사정 또는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 하위펀드 운용사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
- 주기적으로 하위펀드 운용사로부터 운용보고서를 수취하여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성과 및 리스크를 모니터링 할 예정임

(4) 비교지수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므로 현재 성과 비교를 위한 적합한 비교지수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특정한 비교 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 원본 손실 위험	본 투자신탁 및 하위펀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본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장기폐쇄형 펀드 구조 관련 위험	본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은 4 년으로 장기투자신탁이며, 환매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형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을 중도에 현금화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하위펀드가 투자자산으로부터 원리금회수가 지연될 경우 손실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투자할 여력이 있고 (비)상장 주식, 메자닌증권 및 사모펀드 등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 90 일 이내 한국거래소에 집합투자증권으로 상장 될 예정이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보다 거래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부실화 및 가격하락 위험	하위펀드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자산매입 시점에서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며, 가치평가 또는 매각 시점에 가격이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또한, 하위펀드가 투자한 투자자산의 부실화 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투자신탁의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실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경제 및 시장 위험	본 투자신탁 및 하위펀드는 금융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경제성장을, 환율,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 자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위펀드의 성과는 세계 경제,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정부정책 및 조세제도의 변화, 감독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해 자산가치의 하락이나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본 투자신탁 및 하위펀드는 대부분의 자금을 유동성이 낮은 투자자산에 투자할 예정이므로, 계약이나 법률 상 규제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각이 금지될 수 있으며, 투자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산의 처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가격의 변동성 등으로 인한 손실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거래상대방 위험	<p>본 투자신탁 및 하위펀드의 투자대상, 거래상대방,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채무불이행 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금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 또는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하위펀드 투자위험	<p>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위펀드는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 운용내역 및 기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하위펀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산의 가격의 반영도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이루어 집니다. 결과적으로 본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 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집합투자증권 설정취소 위험	<p>이 투자신탁의 모집(판매)이 예정된 규모 이하인 경우 또는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을 하거나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수익의 불확실성	<p>하위펀드가 좋은 조건으로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하위펀드 투자금의 일부 혹은 전부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체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감내할 수 없다면 하위펀드에 대한 투자는 부적합하며, 하위펀드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수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배당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통제 불가능	<p>하위펀드는 그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투자대상 회사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권 취득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 소수 투자자 권리를 제외하고는, 투자대상 회사의 정책이나 경영 상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p>
경쟁	<p>하위펀드는 매력적인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시 다른 잠재적인 투자자와 경쟁을 하여야 하며, 하위펀드가 그러한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최종적으로 투자한 투자대상 기업이 하위펀드의 투자 목적을 충족할 수 있거나, 하위펀드가 약정한 자금을 전액 투자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투자대상회사의 보고에 대한 의존	<p>하위펀드가 정확한 내용의 보고서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투자대상 회사가 제출하는 보고서의 정확성 및 적시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위펀드 투자자는 하위펀드가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에 의존하여야 하며, 하위펀드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하위펀드의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회사는 다양한 보고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위펀드 운용사가 정확하게 잠재적인 투자대상 회사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보고 차이들이 하위펀드 운용사가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평가나 모니터링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하위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하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위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위펀드는 매일 기준가격이 산정되지 않고 매주 1 회 또는 매월 1 회 산정될 수 있는 등 기준가격 산정주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대상자산의 가치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하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불안정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도 불안정한 상태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하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청구 시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간의 기간이 오랜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매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적합한 투자대상 확보 곤란 (분산 투자의 제한)</p>	<p>하위펀드는 운용사의 적절한 투자대상 발굴, 실행 및 실현 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적절한 투자대상을 확보하거나 확보된 투자대상의 투자성과가 성공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률 및 규제에 의하여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위펀드의 투자대상 기업의 수가 제한되고, 하위펀드의 투자수익이 이러한 소수의 투자대상 기업의 낮은 성과로 인하여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의 투자 전략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투자 회수 가능성</p>	<p>하위펀드의 청산 시까지, 성공적으로 하위펀드의 투자대상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 하위펀드는 그 투자대상 펀드나 회사의 지분을 세컨더리 거래에서 NAV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처분하여야 하는 등 예상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을 하여야 할 수 있으며, 하위펀드가 적시에 좋은 조건으로 하위펀드가 보유한 다른 투자대상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을 처분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하위펀드의 적시환매가 어려운 경우 본 투자신탁은 현물 상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소, 중견기업 투자 관련된 위험</p>	<p>하위펀드가 투자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사업위험과 재무적 위험을 지니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들은 초기개발단계에 있거나 영업손실 또는 변동성이 큰 영업성과를 보일 수 있고, 그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 중소, 중견기업들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자 할 때 경쟁이 매우 심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거나 특정기술을 최초로 상용화는 능력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소, 중견기업들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본이 요구되며 기존기업 및 경쟁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업 및 경제환경에 대한 이들 기업의 대응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어떤 life cycle 단계에서도 실패하거나 상당한 가치하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이미 자리잡은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큰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위펀드가 투자하는 유가증권은 개별기업의 재무구조에 있어서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며 이에 큰 손실위험을 수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미투자 위험</p>	<p>금융시장의 축소, 경제여건의 악화, 경쟁심화 등 시장환경의 악화로 인해 투자기간 내에 당 펀드 및 하위펀드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하위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p>	<p>본 투자신탁의 하위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반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운용유연성이 높아 이로 인해 특정 종목, 섹터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 할 수 있으며, 금전차입 및 대여 한도도 공모펀드 수준의 제한이 없어 이로 인해 공모집합투자기구 투자 대비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완화되거나 배제되어 더 많은 투자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투자결과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험	하위펀드 투자대상은 쉽게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하위펀드 운용사는 투자대상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와 입수 가능한 시장 및 기타자료를 바탕으로 하위펀드 운용사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투자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주관적이며 특정산업의 표준(존재하는 경우)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며 투자재산이 종국적으로 실현될 가치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어떤 경우에는 투자대상의 가치산정이 성과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해상충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상충위험	본 투자신탁은 운용사 및 신한금융 계열사 등의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이해상충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상충 위험이 본 투자신탁의 수익성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의 부정확 및 불완전성 위험	하위펀드 운용사가 투자판단 시 이용하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위펀드의 투자와 관련된 실사시, 하위펀드 운용사의 전문성과 실사능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존으로 인하여 최종투자자의사결정시 실사과정에 대한 통제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일반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오퍼레이션 위험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 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뉴딜산업 관련 기업에 속하는 증권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내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관련사채, 상환전환 우선주 등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하위펀드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주식관련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채권 대비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 매각 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 가격을 받지 못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특정 상환일이나 기타 일자에 원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위주로 발행됩니다. 또한 장내 상장되어도 일반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며, 펀드 만기 시까지 전액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 및 하위펀드가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위	본 투자신탁의 하위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시 의무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	<p>운용과 관련된 정보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정보접근에 따라 투자의사결정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오퍼레이션 위험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분배금 지급 위험	<p>투자자에 대한 분배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투자 대상 하위펀드의 성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펀드 만기 시 펀드 만기 시 하위펀드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그 동안 수령한 분배금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결산을 통하여 현금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최종상환 시 정기결산을 통하여 분배된 금액을 포함하여 손익 계산되므로 투자자가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예상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p>
만기변동 위험	<p>하위펀드의 만기환매에 있어서의 어려움, 급격한 거시경제환경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의해 실제 투자기간이 존속기간인 4 년보다 길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p>
의사결정 불일치 위험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할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수익자총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개최가 되더라도 투자신탁의 수익자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자산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이 결렬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p>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하위펀드 처분 위험	<p>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결의 반대 등의 사유로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하위펀드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수자금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여건 등에 따라 하위펀드 상환대금이 결정되므로 이로 인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위펀드가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환매연기절차를 따르게 됩니다.</p>
비상장기업 투자위험	<p>하위펀드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장기업에 비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의 낮은 투명성, 열위한 제도적인 투자자 보호자 장치, 제한적인 투자정보, 감사보고서등 투자정보의 낮은 신뢰성, 낮은 유동성, 높은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투자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는 동 투자신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과세위험	<p>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환매연기위험	<p>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p> <p>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p> <p>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3.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4. 기타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p>
과세제도 변경위험	<p>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p>
기타위험	<p>본 투자신탁은 향후 제도 및 법령의 개정 및 세제 변경 등에 따라 펀드의 청산 일정 및 투자수익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위험분석은 작성 시점에 파악된 위험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나,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이 기재된 것은 아니며, 향후 운용과정에서 분석시점에 인지하지 못한 위험요인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기타 인지되지 않은 위험	<p>본 위험 분석은 작성 시점에 파악된 위험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분석, 작성하였으나, 분석시점에서 인지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하여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펀드 만기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p>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해당 펀드를 각 위험 별로 평가한 후 총괄하여 원본손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1등급, 높은 경우 2등급, 다소 높은 경우 3등급, 보통인 경우 4등급, 낮은 경우 5등급, 매우 낮은 경우 6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6개의 위험등급 중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 3년 경과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게 되며 등급분류기준이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한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예시 >

위험등급	대상 펀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80% 미만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80% 이상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 1) 고위험자산: 주식, 원자재,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2) 중위험자산: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3) 저위험자산: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4) 외환위험에 노출되는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의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및 투자 국가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5) 다른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투자 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집합투자업자가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6)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각 자집합투자기구의 각 모집합투자기구별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7) 상기 명시된 위험등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및 환매 및 전환기준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발행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후 최초로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정 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A.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 B.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2) 수익증권 매입방법 및 판매가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제한없음

(4)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제7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합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 시[오후 5 시]이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폐쇄형)으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설정일 이후 90 일 이내)할 예정이지만, 상장된 수익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수익자가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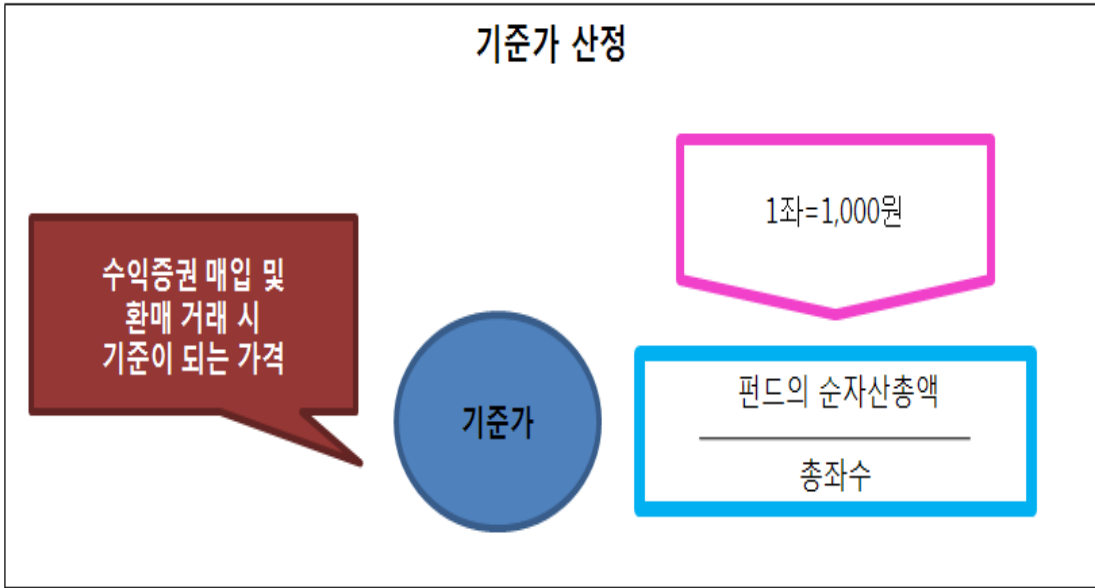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도 이자수익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

주1)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p>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p>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시가(공정가액) 평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3) 피투자펀드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전문투자형사모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평가방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각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액과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력에 관한 사항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력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설정전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설정전	제한없음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납입금액의 1.0% 이내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	-	

* 판매수수료는 위에 기재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보수	총 보수	(동종유형총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0.463	0.50	0.02	0.012	0.995	1.060	-	0.995	1.96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0.463	0.75	0.02	0.012	1.245	1.270	-	1.245	2.211	-
지급시기	매 3 개월 후급					-	사유 발생 시	-	-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 (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주 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주 3)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다수

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동일비중 투자를 가정하여 평균으로 연 0.966%를 산정)를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실적에 따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보수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보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 7)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단,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수익증권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상장수수료 또는 등록수수료, 연부과금 및 제비용
10.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전문 평가용역 비용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단위:천원)

종류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201	305	414	528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98	505	719	94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27	259	396	538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26	460	703	955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선취판매수수료 포함, 단, 후취 판매수수료는 제외).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수익률은 5%,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③ 집합투자규약 제 29 조 및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원본, 이익금 또는 분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임시결산을 통하여 임시결산 종료일로부터 제 10 영업일 이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시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합니다.

(2) 이익초과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1)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제 10 영업일 이내 또는 임시결산 종료일로부터 제 10 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한다)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초과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수익자는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4)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상환금 등의 시효 등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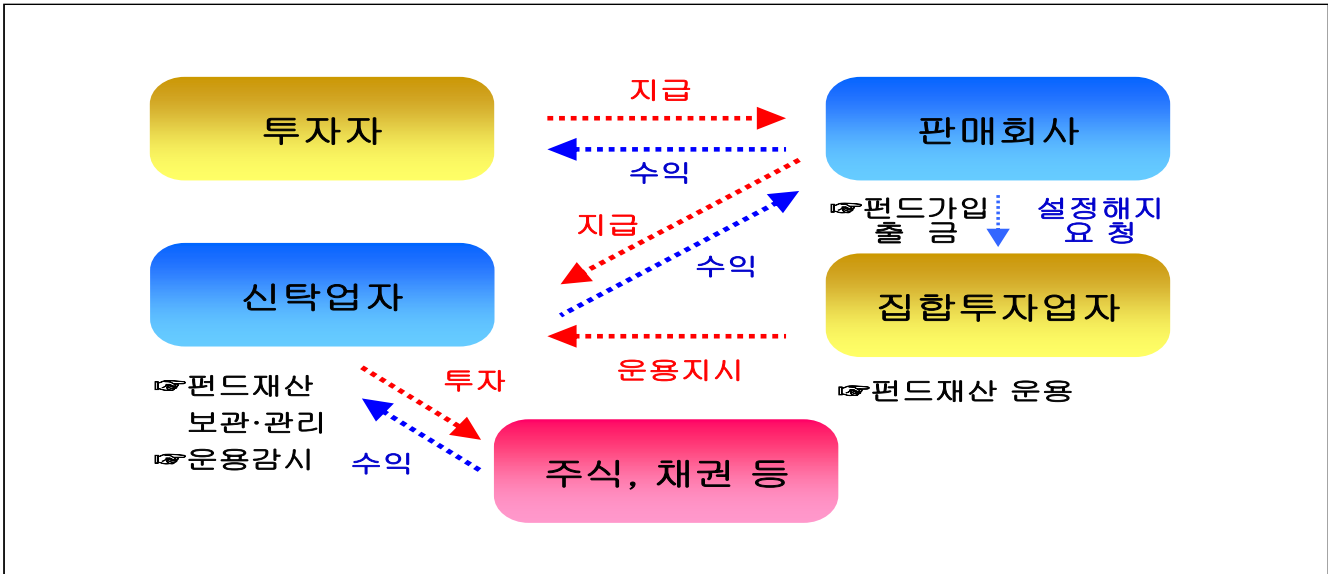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설정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8,19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inhanfund.com)
회사 연혁	2021.01 사명변경(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신한자산운용(주)) 2009.01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출범 (신한 비엔피 파리바 투자신탁운용(주)과 SH자산운용(주)의 합병) 2008.09 신한금융지주그룹, 비엔피 파리바 금융그룹 합작운용사 출범을 위한 MOU체결
자본금	754억원
주요주주현황	신한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대차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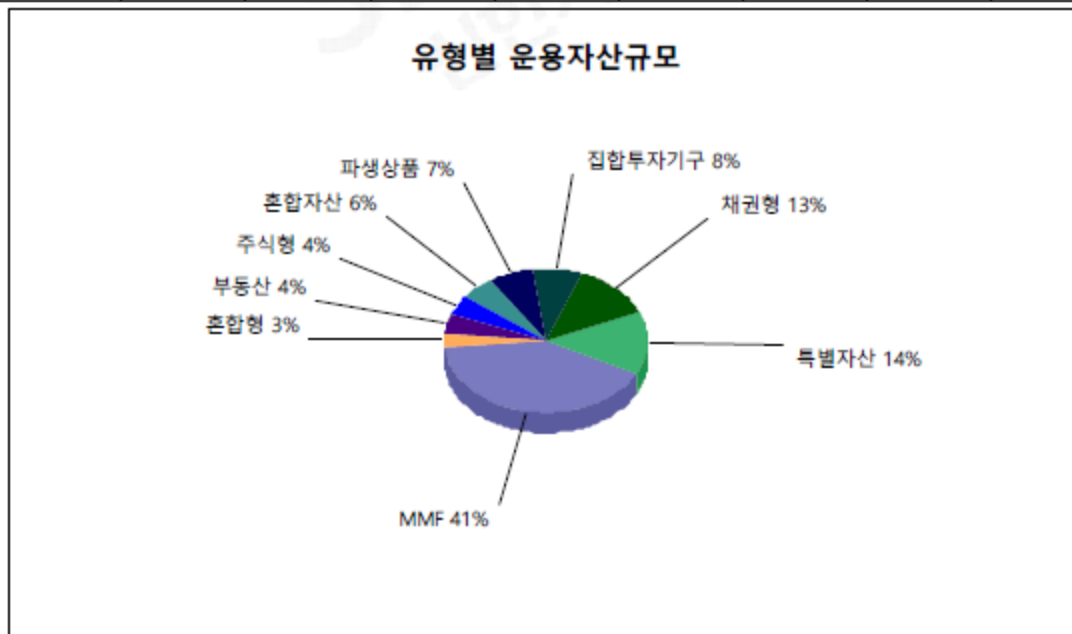
구분	제24기 2019년12월말	제23기 2018년12월말
현금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133,815	132,035
유가증권	23,441	17,740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699	3,728
기타자산	20,848	18,914
유형자산	2,400	1,547
자산총계	184,203	173,964
기타부채	19,678	14,841
부채총계	19,678	14,841
자본금	75,374	75,374
자본잉여금	29,177	29,177
자본조정	76	22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78	-143
이익잉여금(결손금)	60,477	54,487
자본총계	164,525	159,124
부채와자본총계	184,203	173,964

[요약손익계산서]

구분	제24기 (19.01.01- 19.12.31)	제23기 (18.01.01- 18.12.31)
영업수익	84,256	78,378
영업비용	53,069	53,798
영업이익(손실)	31,187	24,580
영업외수익	574	568
영업외비용	478	553
법인세비용차감전계 속사업이익	31,283	24,594
계속사업손익법인세 비용	8,193	5,726
계속사업이익(손실)	23,090	18,868
중단사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23,090	18,868

라. 운용자산 규모 (2021.02.28 현재 / 단위 : 억원)(일임자산 제외)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집합투자 기구	파생상품					
수탁고	16,122	11,503	46,828	28,667	25,301	15,449	52,515	21,068	151,167	368,62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대표전화 : 1588-5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 bank.co.kr

2) 주요업무

(1)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 신탁계약 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 아이타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대표전화: 2180-0400)
인터넷홈페이지	www.shinhanaitas.com

2) 주요업무

(1)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 소	연락처	인 터 넷 홈 페이지
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번지	02-399-3350	www.koreaap.com
나이스피앤아이(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KIS채권평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에프앤자산평가(주)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02-721-5300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에프앤자산평가(주)의 경우 국내채권(CD, CP)만 평가 및 제공함)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 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 222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 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동 시행령 제3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5)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시행령 제 217 조제 3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2 호 및 6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해진대로 다음과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 다음 각 호외의 사유로 집합투자규약 제 42 조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규약 제 37 조와는 별도로 다음의 제 2 항 내지 제 3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 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② 제 1 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변경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 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 1 항에 의한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신탁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 2 항 내지 제 3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규약 제 35 조 제 4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판매

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 2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한 경우에 한한다)
8.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1)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2)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4)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9.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또는 100 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p>집합투자업자인 신한자산운용(주)의 중개회사 선정기준입니다.</p> <p>분기(필요시 변경가능)별로 내부 중개기관위원회(Broker Committee)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서치의 양과 질 -새로운 섹터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업무범위 -거래 실행력 -투자자의 최우선 가치 -비용/수수료 구조 -거래체결의 질과 완벽함 -신용과 평판의 질 -중개기관과 집합투자업자의 IT/통신 연결 -중개기관의 내부 준법감시 절차 <p>선택된 중개회사들의 거래량 분배는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합니다.</p>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주체 : 신한자산운용
- 투자목적 :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장치 마련
- 투자시기 : 최초설정일
- 투자금액 : 2 억원
- 투자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 신탁계약기간종료일까지
-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서 허용하는 의무투자기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 회수 절차 등을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임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 가. 신탁업자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투자설명서
2. 간이투자설명서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투자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자총회	신탁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